

의안번호	2219596
의 퇴 인	임종득 의원
회 답 일	2025.9.3.
추계번호	26B3146
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(보조 및 지원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제2항제5호·제6호·제8호의2에 따라 시설 복구비용과 가축 구입 및 폐기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피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보조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.(제5항 신설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4조(보조 및 지원)	×	• 미첨부 -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- 본문 참조

2. 상세 사유

-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법에 따라 농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함으로써 농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대책을 마련하고 일정 예산을 편성·집행하고 있으며, 「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」을 토대로 지원단가를 규정하여 축사와 축사설비의 파손 및 유실비 복구비용과 가축입식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음

[표] 농어업재해대책비 예결산 현황: 2020~2026년

(단위: 백만원)

연도	소관	농림축산식품부	
	사업명	재해대책비 (1033-302)	재해대책비(융자) (1033-304)
2020	예산	60,188	8,500
	결산	133,634	851
2021	예산	100,000	28,500
	결산	145,604	1,252
2022	예산	150,000	8,500
	결산	65,039	5,893
2023	예산	200,000	—
	결산	170,023	—
2024	예산	280,000	—
	결산	266,323	—
2025	예산	160,000	—
	결산	147,668	—
2026	예산	250,000	—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(「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(II-1), 각 연도)

□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해 시설 복구비용과 가축 구입 및 폐기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피해금액의 70% 이상을 보조하거나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, 개정안의 시행으로 자연재난과 관련한 축산농가의 복구비용이 증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축산농가가 입은 피해금액의 70% 이상을 지원해야 하는 경우는 유실되거나 파손된 농업용 시설 또는 임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소요되는 시설비 및 철거비와 유실되었거나 죽은 가축을 갈음하여 새로 가축을 기르는 경우 소요되는 어린 가축 구입비 등임¹⁾
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발생할 재해 규모와 이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 규모 및 피해 복구 과정에서 소요되는 농업용 시설비 또는 임업용 시설비 및 철거비, 어린 가축 구입비 등에 따라 결정되나, 현 시점에서 자연재해의 발생 여부와 시점 및 이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 규

1)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비용의 70% 이상을 지원해야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
 (1) 유실되거나 파손된 농업용 시설 또는 임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: 시설비 및 철거비
 (2) 유실되었거나 죽은 가축을 갈음하여 새로 가축을 기르는 경우: 어린 가축의 구입비
 (3)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거나 새로 가축을 기르기 위하여 농작물·산림작물 또는 가축을 폐기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: 폐기비

모 예측이 곤란하며, 이로 인해 소요되는 시설비, 철거비, 어린 가축 구입비 등을 합리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우므로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

-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예승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nabo.go.kr

붙임

농어업재해대책 개요

구분	농업재해대책
정의 (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)	가뭄, 홍수, 호우(豪雨), 지진, 해일, 태풍, 강풍, 우박, 서리, 조수(潮水), 대설(大雪), 한파(寒波), 폭염(暴炎), 황사(黃砂)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(病害蟲), 유해야생동물, 그 밖에 이상고온(異常高溫), 이상저온(異常低溫), 일조량(日照量) 부족 등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, 농경지, 농작물, 가축,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
목적	농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, 그 사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
지원 근거	법 제4조(보조 및 지원)
지원내용	• 직접 지원: 농업경영에 필요한 복구비 지원 － 대과대(종묘·비료대), 농약대, 입식비(어린가축 구입비), 시설복구비 등 • 간접 지원: 농작물 피해가 큰 농가에 대하여 생계비 등 지원 • 공공시설 복구비: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 복구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 • 농업정책자금: 이자감면·상환연기 및 신규자금 지원 － 농가피해율에 따라 기 대출 농업정책자금 이자감면 및 상환연기 － 원활한 영농복구를 위해 피해농가에 융자 추가 지원(재해대책경영자금)
지원단가	「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」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6-78호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